

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 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5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5월13일) 상정
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5월14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원허가과장 강성모)

□ 제안이유

-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·공제 등에 가입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보험·공제등의 가입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기준을 정함(안 제2조)
-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함(안 제3조)
-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함(안 제6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의안번호	제122호
의결연월일	2003.5.15 (제104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5. 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·공제등에 가입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보험·공제등의 가입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기준을 정함(안 제2조)
-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함(안 제3조)
-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함(안 제6조)

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(이하 “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